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1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 박희승·김준혁·한정애

이훈기 • 이건태 • 위성곤

서영교 · 어기구 · 김원이

강유정 · 정진욱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,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.

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·소상공인의 폐업, 사망,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임.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, 사업운영자금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2023년 71,461건으로 전년 44,295건 대비 61.3%가 급증하였음.

현행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「소득세법」 제21조에 따른 '기타소득'에 해당하며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,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.

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약금의 약 7.1%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 취지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, 「소득세법」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,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.

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 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). 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1조(소득월액) ①・② (생 략)	제71조(소득월액) ①·② (현행과
	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	③
의 구체적인 범위, 소득월액을	
산정하는 기준, 방법 등 소득월	
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 <후단 신	<u>이 경우</u>
<u>설></u>	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8
	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제1항 및
	제2항의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
	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.